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1. 17(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안 건 : 총 15건
 - 심의 12건(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주차장 조성 등)
 - 보고 3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등)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주차장 조성	공개
2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저수지 조성(6차)	공개
3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나한전 신축	공개
4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개
5	충주 정토사지 범경대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개
6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야외무대 설치	공개
7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한시적 공개제한	공개
8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공개
9	안동 의성김씨 종택 주변 진입로 포장	공개
10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지조암 요사채 신축	공개
11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공개
12	기장 장안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공개

【보고사항】

13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공개
14	서울 숭례문 방재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 보고	공개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숙박시설 건립 허가기간 연장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지하수 개발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01-001

1.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 여주시 소재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륵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여주 신륵사 조사당
 - 소재지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8-87외 4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50m 이격
 -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 사업면적 : 4,309m²
 - 주차면수 : 34대(소형차)
 - 아스콘포장 : 1,328m²
 - 보도포장 : 185m²
 - 조경시설물 : 파고라(1개), 등의자(8개), 조경수(소나무 22주 등) 식재

라. 지방자치단체(여주군)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이므로 해당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필요.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8명, 조건부가결 1명

2.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 저수지 조성(6차)

가. 제안사항

전남 화순군 소재 국보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주변에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경관 및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07.15) : 보류
 - 댐 건설로 인하여 현상변화, 경관변화 등에 대한 도면과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제시할 것.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8.16) : 보류
 - 갈수기, 만수위, 홍수위에 대한 경관변화의 시뮬레이션 검토 후 재심의.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10.18) : 부결
 - 저수지에 대한 만수위와 홍수위를 철감선사탑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켜 문화재를 보호토록 함.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11.15) : 보류
 - 수위를 낮추는 안과 매립안을 병행하는 계획과 매립후의 지형변형도를 보완하여 추후 재심의.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12.20) : 보류
 - 상류 성토를 생략하고 저수량 축소하는 방안으로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 (2) 대상문화재 :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등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580m(홍수위 및 만수위)
 - 사업내용(저수지 신설 및 도로이설)
 - 유역면적 : 700ha
 - 수혜면적 : 174ha(보충 30ha, 신규 144ha)
 - 개발면적 : 174ha
 - 생활용수 : 1,300m³/일(3,700명)
 - 환경용수 : 1,100m³/일(180일)
 - 주요공사
 - 수원공 : 쌍봉제(당초 Q=188만톤 ⇒ 변경 Q=154만톤 감34만톤)
 - 제 당 : L=235m, H=39.14m(중심점토코어형), 여수토 : L=52m, H=1.2m
 - 방수로 : L=228m, B=9.0m, 복 통 : L=180m, 단면 2R=2.5m(표준마제형),
 - 취수탑 : H=31m, D=5m
 - 도로 : 1.43km
 - 이설도로 : 1.31km(B=10m, 아스콘 포장)
 - 진입도로 : 0.12km(B=5m, 콘크리트 포장)
 - 평야부
 - 용수로 : 3조 19.363km(용수간선 : 2조, 16.623km, 용수지선 : 1조, 2.740km)

라. 문화재안전성 예측 보고서 제출(용역자 : 경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

- 조사내용 : 문화재상태조사, 쌍봉제 건립으로 인한 환경 영향 예측 등

- 조사결과 : 기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기존에 타 지역에 축조된 저수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쌍봉제 축조에 따른 주변의 기상변화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재의 손상이 기상, 특히 고습한 환경과 연관성이 큰 점으로 볼 때 쌍봉사 경내 문화재들이 쌍봉제 축조로 인해 손실이 가속화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다만, 저수지 축조 후의 변화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축조 전·후 문화재 보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아울러 주변의 미기상 데이터 구축 필요.

※ 쌍봉제 축조 전·후에 10년 동안 1년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계획 제출(화순군 문화관광과-15467, '12.09.11)

마. 보완자료 제출(화순군 문화관광과-736, '13.01.11)

- 저수량 축소를 위한 수위 변경에 따른 변경안(당초 160.3m, 변경 158.8m, 감 1.5m) 제출(저수량 변경 당초 188만톤, 변경 154만톤, 감34만톤)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쌍봉제 축조 후 10년 동안 1년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저수량을 낮추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 나한전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양산시 소재 보물 「양산 신흥사 대광전」 주변에 나한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나한전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가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흥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양산 신흥사 대광전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산21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나한전 신축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3칸, 51.33㎡
 - 건축양식 : 맞배지붕, 5량가, 전통한식구조
 - 최고높이 : 9.034m

라. 지방자치단체(양산시) 의견

- 문화재와 이격거리가 너무 근접하다고 생각되지만, 건물의 면적 및 양식을 잘 조율한다면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건물양식을 대광전에 비하여 간소한 양식으로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4.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 지정일 : 1979. 05.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40m 이격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
 - 가로 4.8m × 세로 2.5m × 높이 2.95m / 1개동
 - 목재사이딩 마감, 지하 40cm 피트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충주시장) 의견

-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8명, 부결 1명

5.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보물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4-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17m 이격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
 - 가로 4.8m × 세로 2.5m × 높이 2.95m / 1개동
 - 목재사이딩 마감, 지하 40cm 피트 설치

라. 지방자치단체(충주시장) 의견

-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건으로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8명, 부결 1명

6.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야외무대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 문화재보호구역 내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구역 내 기존 노상무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가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영산 만년교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434번지
 - 지정일 : 1972. 03. 0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4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위치
 - 사업내용 : 야외무대 설치
 - 야외무대 1개동 면적 72㎡ / 바닥 콘크리트 위 에폭시페인트 마감
 - 막구조(기타강구조) / 고급고강도천막지

라. 지방자치단체(창녕군) 의견

- 본 사업은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가 위치하고 있는 영산호국공원 내 야외무대 1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호국공원 내에는 위령탑 및 충혼탑, 영산현감 공덕비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역에도 1990년대 말 시공된 콘크리트 무대바닥이 조성되어 있음.
- 본 야외무대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제25호·제26호) 시연 축제인 “삼일민속문화제”의 부대공연 무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3일간 개최되는 축제는 영산면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만년교가 위치하는 호국공원은 축제 전야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함.
- 1만 여명 이상이 찾고 있는 삼일민속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상설 야외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니, 설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로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7.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한시적 공개제한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국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공개제한 협의에 대하여 공개 제한사항 및 출입 허가자 허가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화재우려 등이 있는 장경판전을 한시적으로 공개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 동 사항은 2008년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회의('08.03.13)에서 '인솔자에 의해 50명 단위 제한관람' 사항이 가결되었으나, 실제 제한공개는 추진하지 않았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해인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 지 정 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현장위치 : 합천 해인사 내 장경판전 일원
 - 주요내용(장경판전 일원 한시적 공개제한 및 출입허가 신청)
 - 목적 : '12.10월 화엄사 방화사건을 계기로 화재위험이 우려되는 장경판전 일원의 관람을 통제하여 보존하고자 함.
 - 제한기간 : '13.01~'16.12.31(4년간)
 - 제한 관람시간 : 하절기 08:30~18:00 / 동절기 08:30~17:00
 - 동선제한 : 수다라전 정면 좌측 앞쪽에서 좌측면까지 동선제한 유도

- 출입허가자 : 법보전 의식행사(기도스님), 감상(순찰스님), 경비인력 및 학술목적 조사자, 판전기도 접수신도(명찰 교부·착용)

라. 관리자(해인사) 의견

- 2012년 10월 05일 화엄사 각황전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방화로부터 안전한 장경관전 제한 관람 동선을 2012년 11월 01일 법보종찰 해인사 총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결의.
- 변경되는 관람동선은 소수인원으로 관람객 통제가 용이하며 관전의 부분 개방으로 법보전, 수다라장 동편, 동·서 사간전이 방화에 안전하다고 판단.
- 부분개방으로 대장경의 성스러움과 품격도 함께 상향된다고 판단됨.
 - 경비 인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4명 배치(별첨4 참조)
 - 감상 및 소임자 스님(법보전1000일기도스님) 외에는 참배 시간외 관전 출입금지
 - 해인사 접수처에서 판전기도를 접수한 신도는 종합접수처에서 명찰을 교부·착용 후 출입(시간외에는 참배금지)
 - 3월 정대불사 및 9월 무생계 법회 때는 문화재청 승인·허가 후 공개 개방
 - 장경관전 참배 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08:30~18:00(하절기), 08:30~17:00(동절기)
 - 장경관전 Guard-Line 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다.

마. 지방자치단체(합천군수) 의견

- 해인사장경관전 제한관람에 대하여 해인사 의견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근 발생한 방화사건 등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제한관람이 필요하며,
- 제한관람지역 상시출입가능자는 경비인력 및 법보전 의식행사(기도스님), 감상(순찰스님), 학술목적조사 등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 기타 출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범운영기간을 2년간 시행 후 재심의.
 - 관람 허가는 사찰에서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8.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전파기지국(주)
- (2) 대상문화재 :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46 (학봉리)
 - 지정일 : 1998. 09.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산11-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403m
 - 사업내용 :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 등산객 조난 및 구조에 용이하도록 이동통신 두절 현상 개선 위함.
 - 설치시설 : 통신강관주(H 20m, 4.2X5.2m), 헬스(H 1.8m, L 18m), 전기맨홀(0.6X1, 1개소), 전기지중(2개관, 30m)
 - 공사방법 : 헬기 및 인력공사, 부지 내 평탄작업으로 토사 유출입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공주시) 의견

- 보물로부터 403m 이격되었으며, 오층석탑에서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으므로 오층석탑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안동 의성김씨 종택 주변 진입로 포장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의성김씨 종택」 주변에 진입도로를 포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진입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임하면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의성김씨 종택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경동로 1949-9 (천전리)
 - 지정일 : 1967. 06.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80-3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진입도륙 포장
 - 도로길이 : 진입로 직선 102m, 진입로 좌측 40m
 - 포장넓이 : 466m²
 - 포장공 : 흙콘크리트(Soil Con'c, 100T~200T)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사업 예정지는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전면 진입도로로 마을 안길은 기 소일콘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나 종택진입로는 비포장으로 진출입시 요철이 심하여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여 금회 시행하는 소일콘포장으로 시공하여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기존도로보다 10cm 높일 경우 배수 등 문화재 주변 경관과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10.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 지조암 요사채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변에 위치한 지조암의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 (2) 대상문화재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1011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330m 이격
 - 사업내용 : 봉정사 지조암 요사채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48.60㎡(48.60㎡)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한식토기와 지붕
 - 최고높이 : 6.54m (지상 1층)

라. 지방자치단체(안동시) 의견

- 요사채 건립 위치는 봉정사 극락전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으로 봉정사 경내에서 좌측 뒤편 약 300m 떨어진 지조암 구역으로 봉정사에서는 산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기존 지조암 건물과 조화되도록 건립 하는 것으로 당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11.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주변 사찰음식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사찰음식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 (2) 대상문화재 :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 201길 41 (도학동)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35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약 92m
 - 사업내용 : 사찰음식체험관 건립
 - 목적 : 템플스테이 용도의 사찰음식체험관 건립으로 사찰음식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대지면적 : 11,494.00㎡
 - 건축면적(연면적) : 151.20㎡(396.9㎡) 정면 7칸, 측면 3칸, 초익공
 - 건축구조 :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2층 한식목구조, 한식토기와
 - 층수 및 높이 : 지상 2층, 11.78m

라. 지방자치단체(대구시 동구) 의견

-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진달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부산 기장군 소재 보물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지정('12.08월)으로 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기장군수
- (2) 대상문화재 : 기장 장안사 대응전
 - 소 재 지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 외
 - 지 정 일 : 2012. 08. 06.
- (3) 신청내용(기장 장안사 대응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기장군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구역 범위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10:3 이상)/(1층7.5m/2층11m)	
1구역	○ 기존 시설물 규모 내 재·개축 및 사찰 관련 건축물의 1층 이하 신축 허용 ○ 기타시설물 신축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		250m 이내
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50m ~ 500m
공 통 사 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라. 현지조사의견(2013.01.09,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장안사 주변은 전체가 임야지역으로 산 능선에 쌓여 있으며, 사찰 전면으로 진입도로와 하천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임.
- 장안사 전면도로를 따라 진입부에는 군에서 설치한 농산물 판매점이 있고, 장안사를 지나 능선 너머에는 한옥 형태의 음식점 한 곳이 있는 상황임.
- 장안사 주변 산 능선까지의(약 200m) 임야와 진입부 판매점이 있는 지역은 1구역으로 제한하되, 사찰을 지난 지역과 200m 너머 지역은 산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에 따라 허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현지조사 의견대로 허용기준을 마련해도 무방할 것임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허용기준을 마련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3-01-013

13.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보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 불국사 경내
- 지정일 : 1962. 12. 20.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5월 ~ 2014.12월(3년8개월)

(3) 보고내용

- 2012년 추진경과
 - 해체수리 착수보고회(2012.9.27.)
 - 상륜부 부재 해체(2012.10~12월)
 - 보주에서 노반, 찰주 등 18개 부재 해체완료
 - 해체과정 조사, 촬영, 영상기록
 - 해체 부재 공개
- 2013년 사업계획
 - 찰주 보존처리
 - 비파괴조사, 탈염처리 등(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송)
 - 탑신 및 기단부 해체

- 부재 해체 및 기단내부 적심현황 조사
- 사리장엄구 수습
- 2층 탑신 사리공 내 유물 수습
- 조사연구
- 지반조사, 석재산지추정, 적심채움방안 · 팔방금강좌, 은장제작 연구 등
- 부재 세척 및 접합, 강화처리

(4) 주요 추진경과

- 균열원인 조사분석 연구('12.2완료)
 - 동북측 상층기단 내부 적심석이 풍화·내구성저하로 파괴되어 지지점 상실, 1층 탑신 우주에서 작용하는 집중하중(부재력)이 내구성이 저하된 상층기단 갑석의 단면내력을 초과하여 균열 발생
- 가설시설 설계 및 현장설치('12.5~9월)
- 가설시설 설치 관련 자문회의('12.8.7)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보고('12.8.16)
- 해체수리 착수보고회 개최('12.9.27)
- 사적분과위원회 보고('12.11.14)
- 석탑 풍화훼손도 조사('12.11.30)
- 부재해체 관련 자문회의('12.12.05)
- 상륜부 부재해체('12.10~12월)

라. 향후 추진계획

연도	주요 내용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신 및 기단 해체 및 부재조사(찰주 등) ○ 보존처리(세척, 보수, 접합), 지반조사 ○ 석재산지추정 · 적심채움 방안 · 팔방금강좌 · 은장제작 연구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탑복원, 복원결과 모니터링 ○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14. 서울 숭례문 방재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 보고

가. 보고사항

현재 복구 추진 중인 국보 「서울 숭례문」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재설비와 국보 제1호의 위상과 품격을 고려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숭례문 복구공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숭례문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재설비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
 - 지정일 : 1962. 12. 20.
- (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숭례문의 방재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
 - 사업기간 : 2013.01 ~ 2013.02(예정)
- (4) 추진경과
 - 2008.02.10 : 숭례문 화재 발생
 - 2008.05.20 :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발표(문화재위원회 보고)
 - 2008.11 ~ 2009.11 : 숭례문 복구 설계 추진(문화재위원회 보고)
 - 2009.12 ~ : 숭례문 복구공사 추진
 - 2012.04.09 : 숭례문 방재관리시설 추진(문화재위원회 보고)

※ 당초 방재관리시설 연면적을 254㎡로 보고 하였으나 279㎡로 변경

○ 2012.12 : 송례문 문루공사 마무리

※ 방재설비 관련으로 2008년 이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8회)와 서울시 중부소방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경관조명 관련으로 2011년 이후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4회) 서울시 경관조명심의를 완료하였음

라. 방재설비 및 경관조명 세부 내용

(1) 방재설비

○ 소화설비

- 문루내부 : 스프링클러(상층 74개, 하층 74개) 설치
- 문루외부 : 옥외소화전(4개), 방수총(4개)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 불꽃감지기(상층 8개, 하층 8개) 설치
- 광센서선형열감지기(220m) 설치

○ CCTV

- 3세트[문루내부(4개), 육축 전·후면(6개), 관리시설 후면(2개)] 설치

○ 피뢰설비 설치

(2) 경관조명

- 문루, 육축, 성벽에 9종류 등기구(165개) 설치

마. 향후 추진계획

- 2011.11 ~ 2013.02 : 가설덧집 해체
- 2011.11 ~ 2013.02 : 송례문 방재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
- 2013.04 : 송례문 방재관리시설(관리동) 완료에 따른 방재설비 가동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 흥인지문」 주변 숙박시설 건립 허가기간 연장 등 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 계		2건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	서울 종로 (주) 동승)	○ 숙박시설 건립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허가일로부터 22개월 - 변경 : 허가일로부터 '13.6.30까지	변경허가 (허가기간 연장)	'13.01.14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70호)	울산 울주 (○○○)	○ 지하수 개발 1개공 - 목적 : 생활용수 - 개발심도 : 170m - 양수능력 : 35톤/일 - 지상 상부보호시설 90cm 시설물 설치 등 ○ 보호구역에서 약 420m 이격	허가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안대로 시행)	'13.01.07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